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1. 16 선고 2018가단225917 판결 [보증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18. 10. 19

판결 선고 2018. 11. 16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,445,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8. 6. 15.부터,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. 7. 20.부터 값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을 영위하고 있고, 피고 주식회사 B 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는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.

나.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. 1. 17.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진행되는 예식 등 각종 행사의 사진 및 비디오촬영을 전속적으로 원고가 진행하되, 원고가 피고회사에 보증금을 1억 5,000만 원을 지급하고, 계약기간은 2017. 3. 1.부터 2019. 12.31.까지로 하며, 피고 회사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사진촬영 협력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, 원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에서 진행한 촬영비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21,445,000원에이른다.

라. 원고는 2018. 4. 9.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으로부터 '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 C이 보증금 및 결재대금등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'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.

마.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에 위 회사의 계약 미이행을 이 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, 위 소장부분은 2018. 6. 14. 피고회사에 송달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증금반환채 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.

따라서 피고들은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및 미결재대금 합계 171,445,000원 및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

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 또는 인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,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사진촬영 후 앨범을 교부하지 않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손해배상

청구를 당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가 고객들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.

판사 김지현